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60호 2021. 4. 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40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369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
고.....3
- 정선군 공고 제2021-400호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1-40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5
- 정선군 공고 제2021-404호 정선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입법예고.....5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40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652호(1974. 4. 0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사업

나. 명 칭: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선) 개설사업(소교량)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 변경 시행	
도로	소로 3-17호선	L=442m, B=6.0m	L=105m, B=6.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1.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신동읍 조동리	268	대	964	22	-	정선군			
2	신동읍 조동리	268-2	대	466	466	-	정선군			
3	신동읍 조동리	267-12	대	106	22	-	정선군			
4	신동읍 조동리	267-13	대	74	74	-	정선군			
5	신동읍 조동리	267-15	대	106	106	-	정선군			
계				1,718	690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369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소상공인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3. 24.~ 2021. 4. 13.

5. 의견제출

-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전 화: 033-560-2440

☞ F A X: 033-560-2594

☞ E-mail: miran697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
7. 재난재해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할 수 있다.

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시설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 수령 후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⑦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6. 유홍,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정선군 공고 제2021-400호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1. 재난관리실태 공시 총괄

- ◆ 2020년에는 7~8월 장마철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에 23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69억여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입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4개과 132명으로 자연재난 및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였으며,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2016~2017 일제정비를 거친 후, 마을경보수신기, 수위관측시설 등을 보완하여 총 9종 1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주민 등 6,3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신속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등 주요 재난별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86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총 572억4백만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로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웬스 등 4종의 환경 방재물자와 호우피해 등에 대비하여 마대 등 7종 27,190점의 수방자재를,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및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 39개

소에 199개의 병상과 의사 49명, 간호사 106명의 응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주민 20,014명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60개소의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는 사다리차와 구조공작차, 배연차 그리고 드론 1기를, 응급복구 장비는 덤프, 굴삭기 등 318대, 산불진화헬기 1대 임차배치 및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 2,101점(대)의 진화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재난복구 및 대응관련 인력(기능)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62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등 특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6,759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시설 108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2개소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난관리 기금적립액은 4억6천5백만원으로 법정기준액의 110%를 확보하였으며,

- 2020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28억3천4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당초 계획된 목적 사업비 3억5천만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총 17억9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A등급으로 지난해(2등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 장치로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돕는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 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구조적인 재난대응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정선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단위 : 건 / 천원)

일시	피 해 원 인	피 해 내 용	복 구 내 용	추진 사항
`20.7.28~8.11	호우	-공공시설 : 6 / 504,833 -사유시설 : 98 / 36,481	-공공시설 : 36 / 4,944,000 -사유시설 : 320 / 23,750	
`20.9.1~9.5	태풍	-공공시설 : 36 / 1,755,719 -사유시설 : 791 / 65,667	-공공시설 : 36 / 1,883,000 -사유시설 : 791 / 7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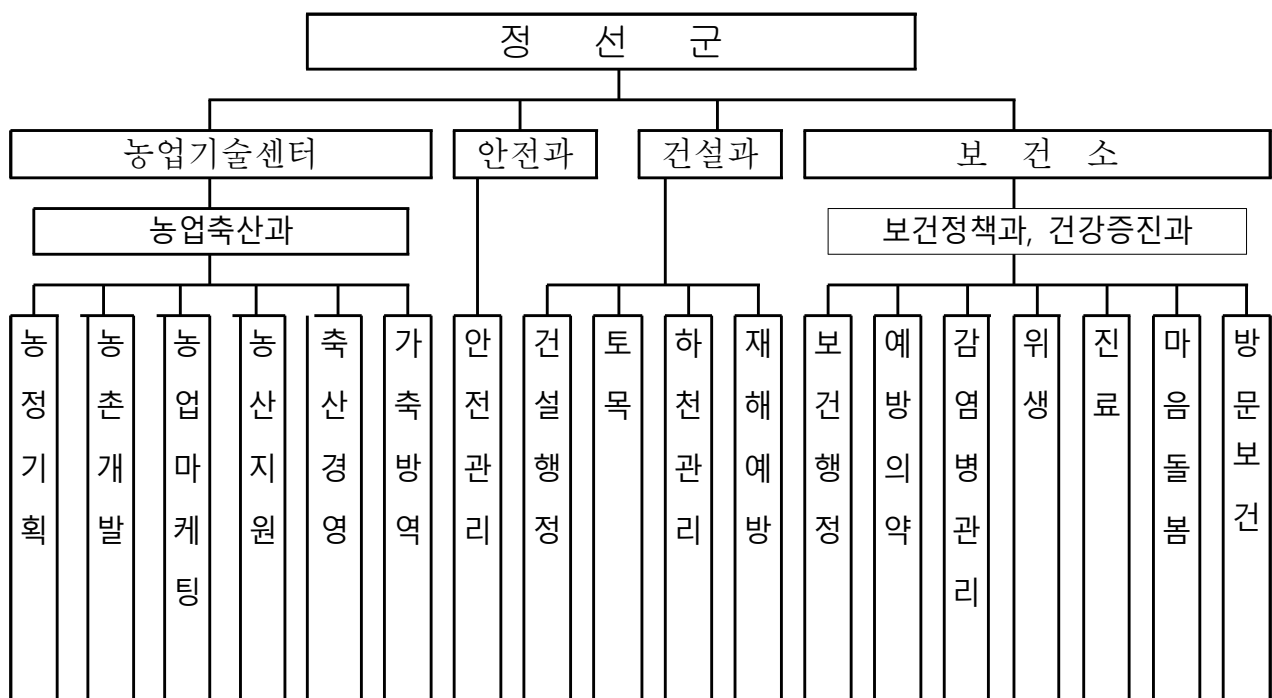
☞ 피해발생 증감원인

- 7~8월 장마철 집중호우와 9월 9호 태풍 마이삭 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피해규모가 증가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조직의 구성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포함)

○ 정원

(단위 : 명)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40	140	-	6	35	42	37	20	7
	현원	132	132	-	4	52	32	26	14	2
농업 축산과	정원	21	21	-	1	7	8	2	3	7
	현원	21	21	-	1	7	8	2	2	1
안전과	정원	21	21	-	1	5	6	6	3	-
	현원	20	20	-	1	5	7	5	2	-
건설과	정원	20	20	-	1	6	5	5	3	-
	현원	20	20	-	1	6	5	2	5	1
보건소	정원	78	78	-	3	17	23	24	11	-
	현원	71	71	-	1	34	12	17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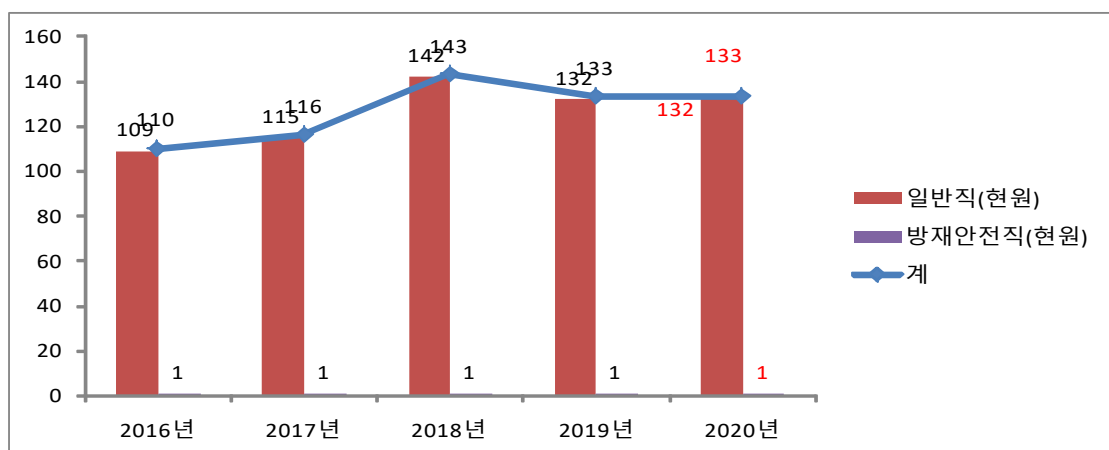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2	-	-	-	-	2	-
	현원	1	1	-	-	-	-	1	-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09	115	142	132	132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1	1	1	1



☞ 정선군 조직개편으로 조직 정원이 2019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현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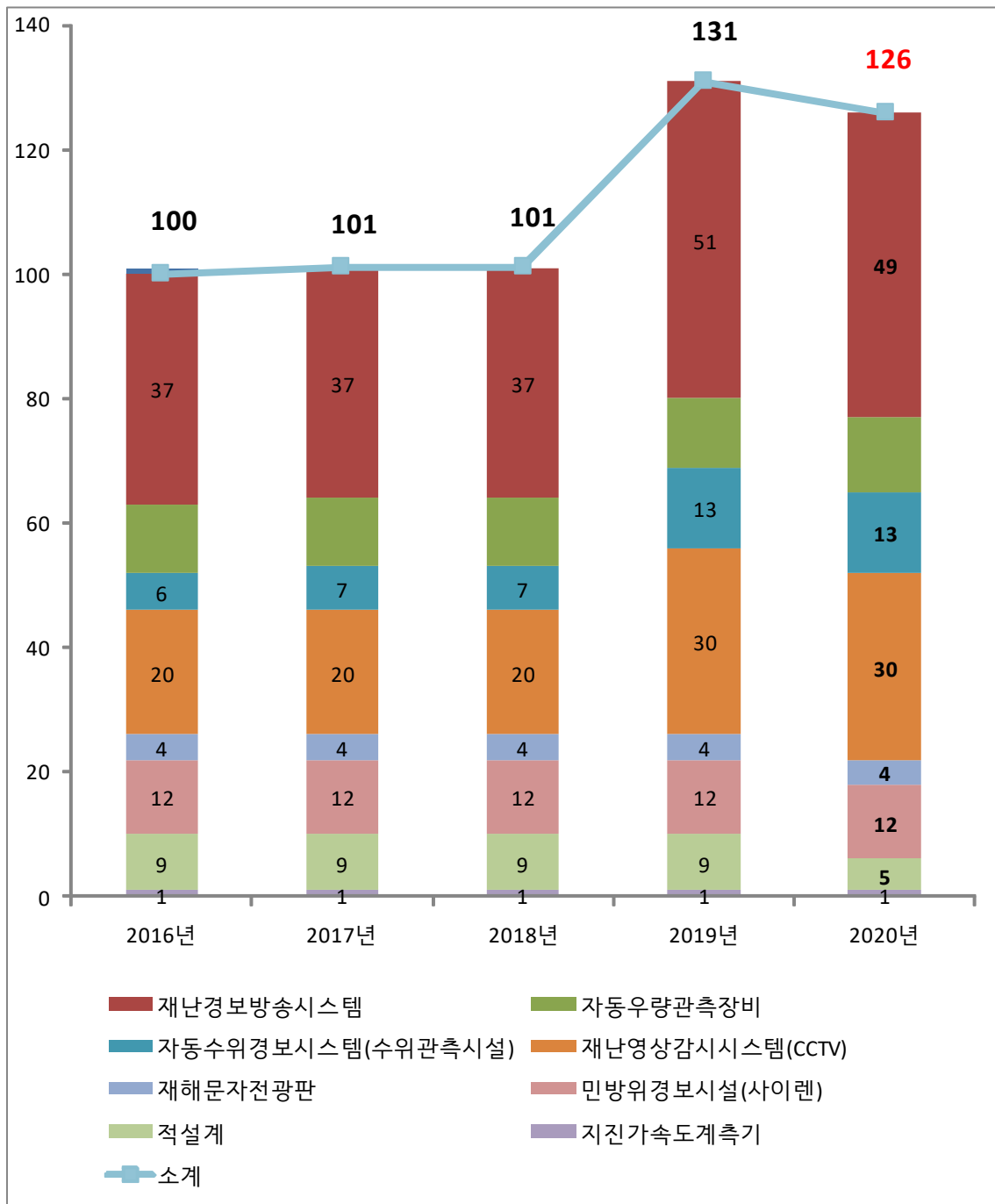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재난경보방송시스템	49	가수리경로당 외 48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3	정선2교외 12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0	역전배수펌프장외 29개소
재해문자전광판	4	임계면사무소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위성전화기	5	정선군청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적설계	10	임계면 백북령외 9개소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00	101	101	131	126
재난경보방송시스템	37	37	37	51	49
자동우량관측장비	11	11	11	11	12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7	7	13	1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20	20	30	30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위성전화기	-	-	-	-	5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12	12	12	12
적설계	9	9	9	9	5
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1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증감원인

-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로 장비 수는 감소하였으나 휴대용 위성전화 시스템을 추가하였음.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 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재난안전관리자과정	6.22~7.29	한국재난안전기술원	3	
제4기 자연재난대응	11.23~11.2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재난안전실무자과정	7.6~7.1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부단체장 전문교육과정	10.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대비훈련실무과정	7.13~7.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	
제2기 재난안전체험과정	6.12~6.14	강원도 인재개발원	1	
재난안전실무과정	10.26~10.2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4기 사회재난대응과정	11.2~11.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3기 저수지, 댐 안전관리과정	11.9~11.1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생활안전과정	7.7~7.1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 · 훈련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 10. 28	춘천시 세종호텔	3	2020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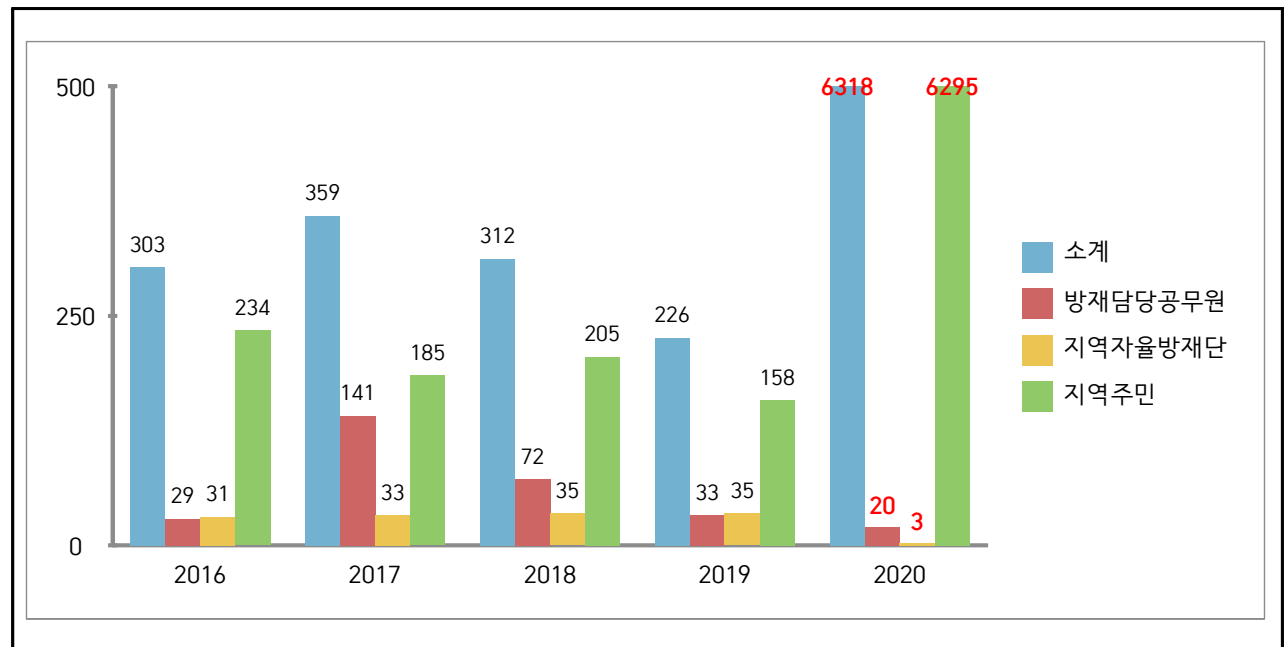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 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심폐소생술 교육	' 20년도 연중	다중이용시설 및 복지시설	2,158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정선군 정선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 20.6.2	정선소방서	45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정선군 정선소방서	
아동·청소년 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	' 20.10 월~11월	관내 학교 3개소	94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	정선군 보건소	
완강기 체험 및 미래소방관 교육	' 20년도 연중	정선소방서	3,998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학생진로체험	정선군 정선소방서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03	359	312	226	6,318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교육	29	141	72	33	2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31	33	35	35	3
지역주민 교육·훈련	234	185	205	158	6,295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전문성교육 취소 또는 규모 축소로 교육 참석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주민 대상 안전교육은 찾아가는 강의형 교육을 주로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학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음. 특히 코로나19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직업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학생대상 교육 참석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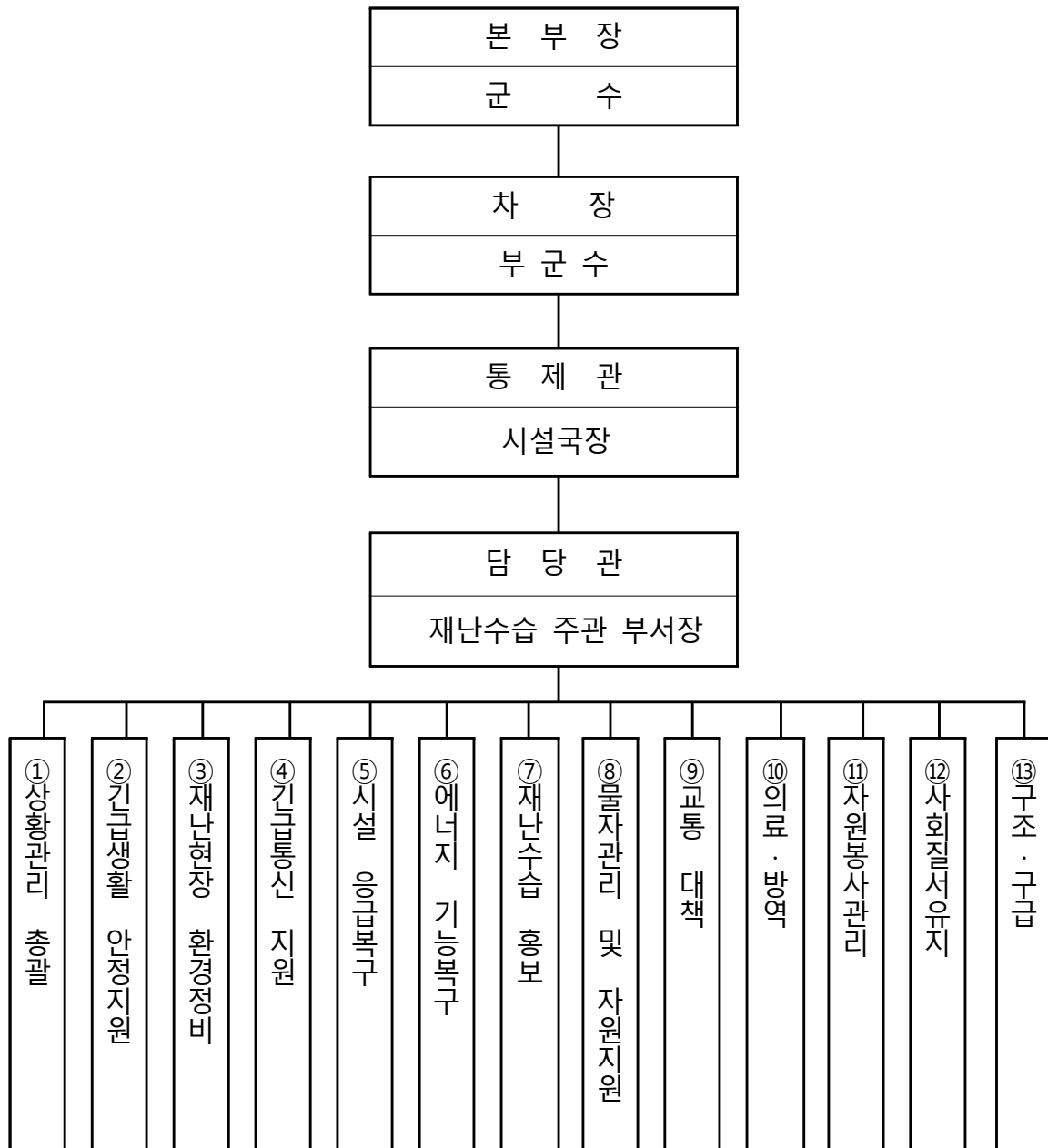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①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군수 • 위 원 : 11인	•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 및 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11인	•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전 사전검토 • 재난관련기관 협조사항 처리 • 안전대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도모
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군수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 •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군수→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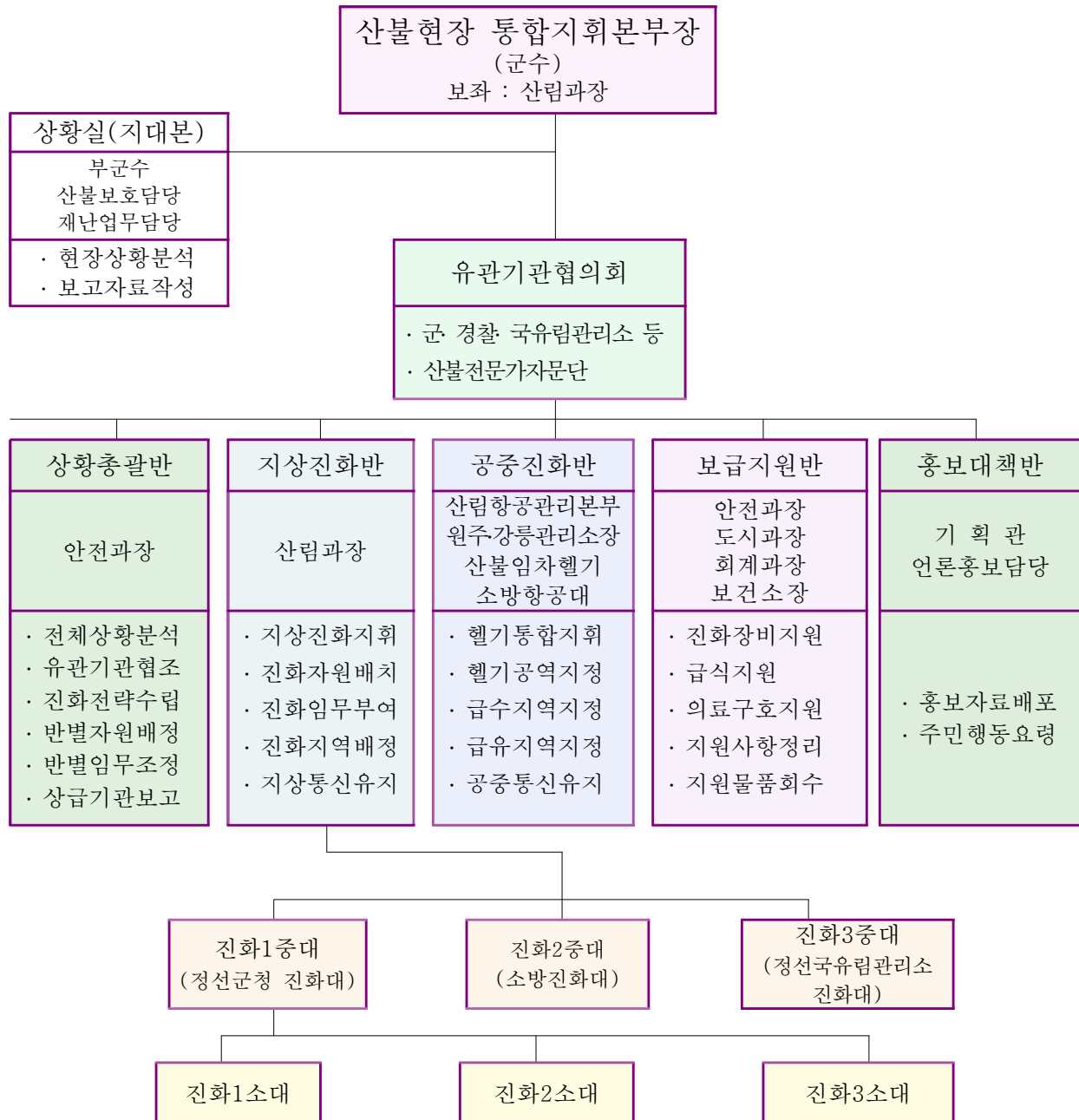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총무행정관)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전략산업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유지(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 교통수단 지원(안전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행정관)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총무행정관, 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안전과, 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②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 정선군 감염병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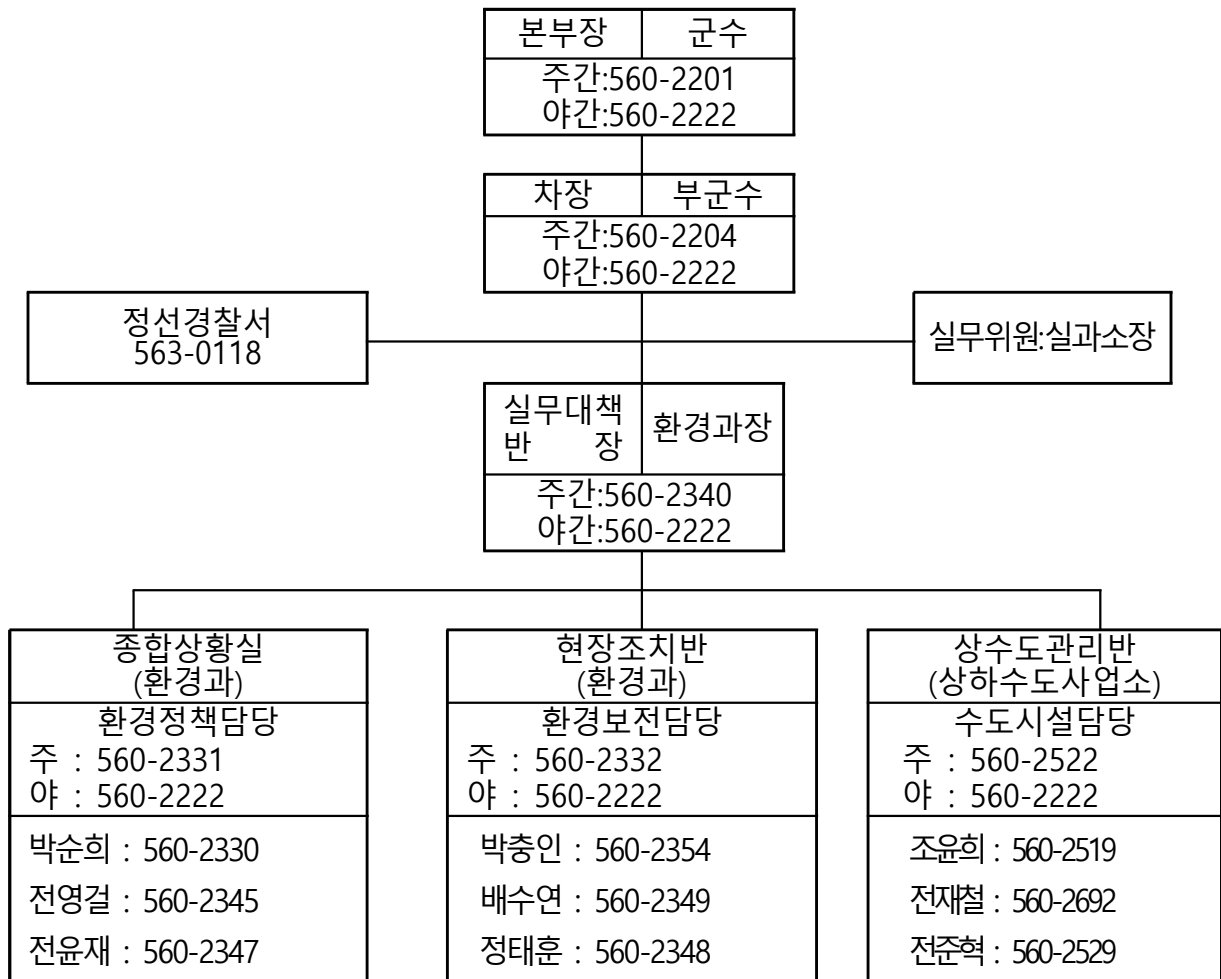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팀별 임무 및 역할

구성	임무 및 역할	관련부서
총괄팀	○ 방역대책수립 및 질병관리본부, 강원도와 업무협조 ○ 환자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관리 ○ 환자이송 및 검체 수송 ○ 지역내 격리병원 지정 및 격리시설 관리 ○ 지역내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 질병정보 및 예방관리수칙 홍보 ○ 개인보호장비(N-95마스크, 보호복, 장갑, 고글등) 수급 관리	감염병관리
역학조사팀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 ○ 퇴원환자관리	위 생
방역소독팀	○ 지역내 감염지역 소독 (환자집, 환자이동구간, 구급차량, 보건소 등)	예방의약
행정지원팀	○ 차량 및 인력지원 (구급차, 운전원)관련 행정업무 ○ 방역물품구입 및 격리환자 관리물품 지원 ○ 예산지원 및 집행	보건행정
소내지원팀	○ 선별진료소운영 ○ 정신건강상담 지원 ○ 기타지원사항(인력, 접촉자 추적관리 등)	건강생활

○ 수질오염사고 대책반 구성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 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560-2601	560-2611	560-2621	560-2631	560-2641	560-2651	560-2661	560-2671	560-2681

덕 정 수 장	송 정 수 장	고한(사북) 정 수 장	납돌(조동) 정 수 장	증 정 수 장	산 정 수 장	화암(회동) 정 수 장	여량(북평) 정 수 장	임 정 수 장	계 정 수 장
812-4033		812-4043	812-4036	812-4044		812-4028	812-4037	812-4041	

◇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정수장 총괄관리)
(사무실 812-40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정선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정선군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정선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명피해 예방	2007.04.17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2.05.30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사전검토 및 저감대책 마련	2013.07.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18.04.16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전보험 운영 규정 마련	2018.10.05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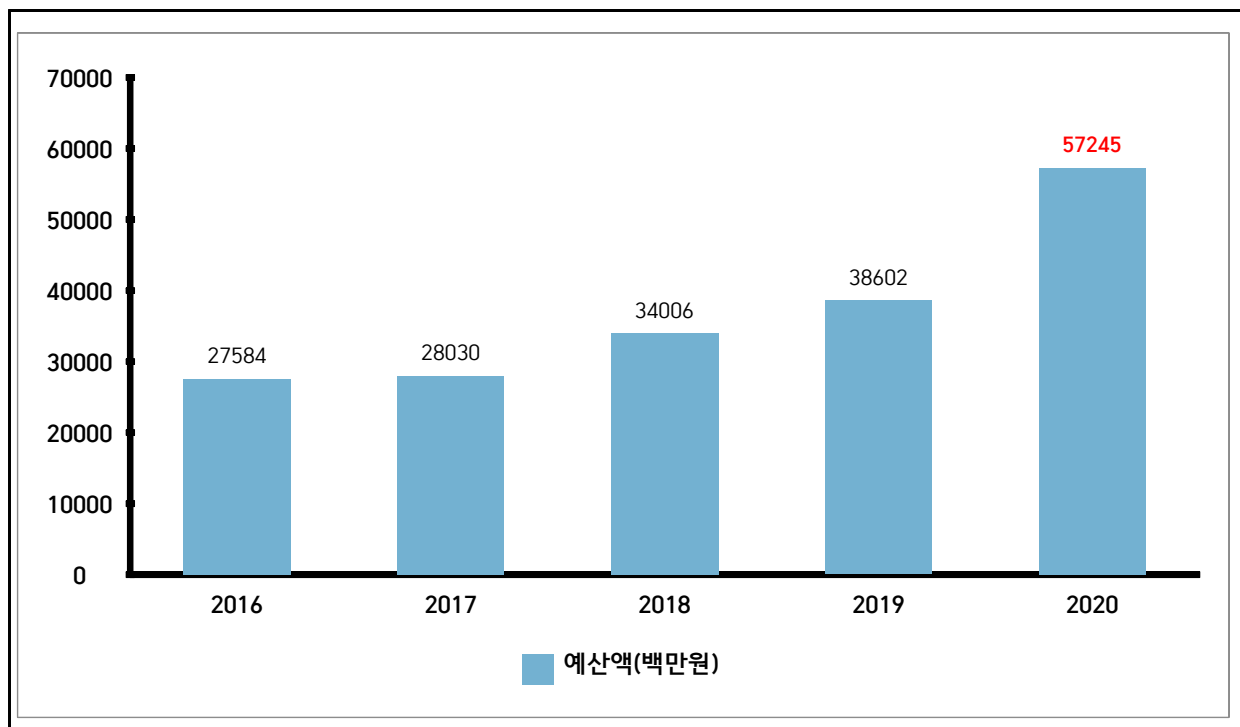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목적
급경사지 정비사업	정선읍	봉양2 급경사지 정비	2020년	18,000	급경사지 재해예방
급경사지 정비사업	고한읍	절골지구 급경사지 정비	2020년	200	급경사지 재해예방
급경사지 정비사업	남면	약수4지구 급경사지 정비	2020년	500	급경사지 재해예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임계면	월탄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20년	6,832	재해위험지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운영	정선읍, 북평면	배수펌프장 8개소 운영관리	2020년	170	침수재해 방지
정선 소1-16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복구공사	정선읍	합벽식 옹벽 L=78m, 도로포장 복구 L=140m	2020년	2,670	붕괴도로 긴급복구
농촌생활 용수개발	정선읍 외1 읍면	생활용수개발	2020년	284	가뭄예방 및 생활용수공급
농경지 배수로정비	정선읍 외8개 읍면	배수로정비	2020년	98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수리시설정비	정선읍 외3개 읍면	수리시설정비	2020년	45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농업기반정비 및 유지보수	정선읍 외5개 읍면	배수로정비	2020년	3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신동읍, 여량면	처리용량 증설	2020년	8,204	안정적 하수 처리
하수관로 정비	지장천, 신동	하수관로 설치	2020년	3,063	수질개선 및 안정적 처리
소규모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정비	남평, 하동	처리용량 증설 및 정비	2020년	1,403	안정적 하수 처리
공공하수처리시	정선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020년	6,187	안정적 하수 처리

설 운영관리		운영관리			
마을하수도 운영	정선군 관내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2020년	4,488	안정적 하수 처리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정선군 관내 9개 읍·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2020년	578	안정적 하수 처리
하수관로 정비	고한읍, 사북읍, 남면	하수관로 설치	2020년	2,936	수질개선 및 안정적 처리

○ 재난방지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2015 ~ 201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7,584	28,030	34,006	38,602	57,245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장기사업의 본공사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2020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확보액 4,596백만원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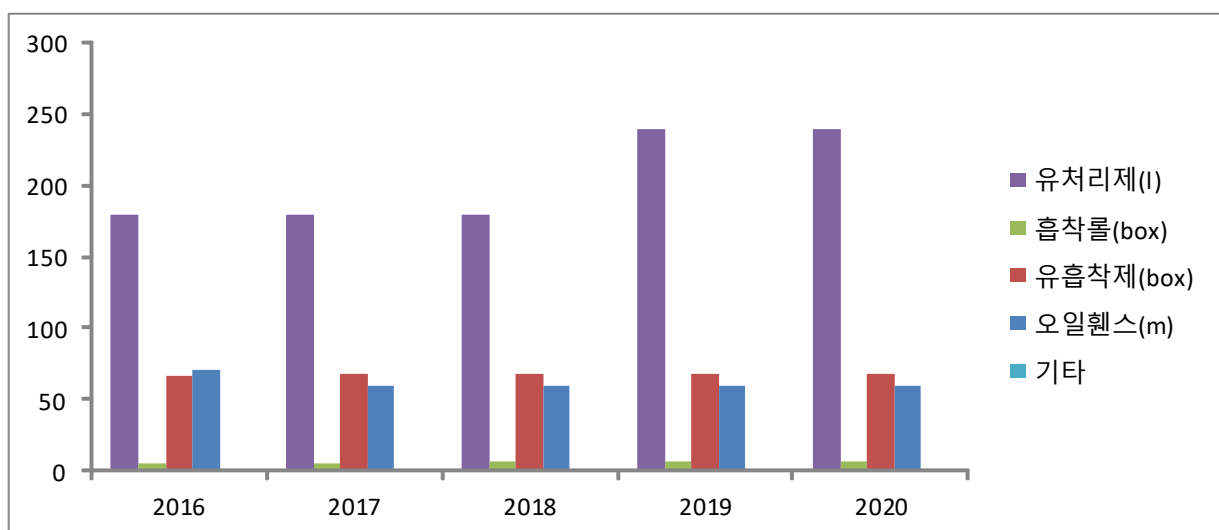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방재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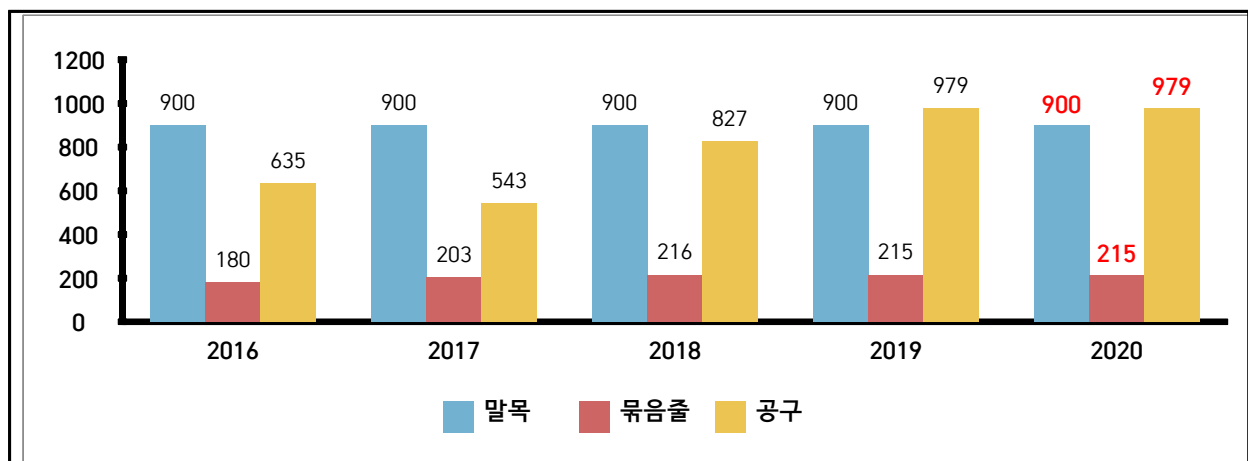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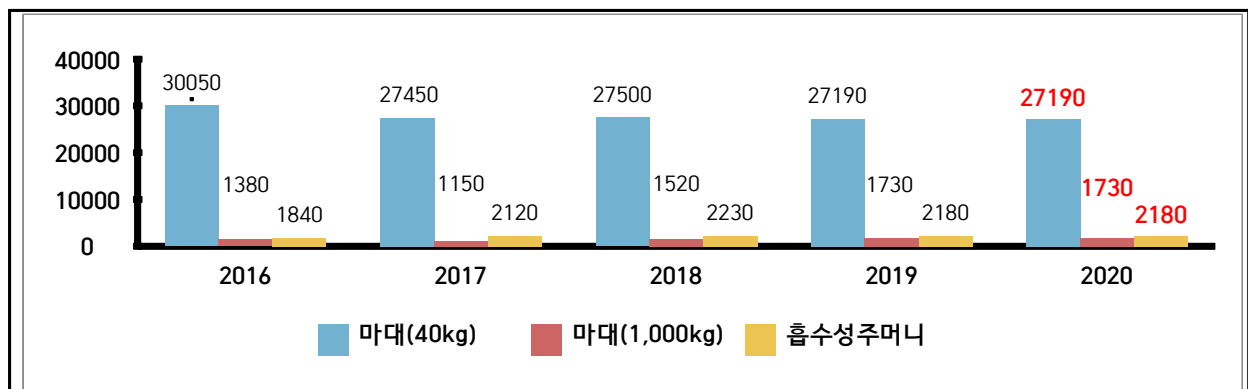
계	오일웬스 (m)	유흡착제 (BOX)	흡착물 (BOX)	유처리제 (ℓ)	기타
총계	60	68	6	240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방재물자 종류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21	313	314	374	374
오일웬스(m)	70	60	60	60	60
유흡착제(BOX)	66	68	68	68	68
흡착물(BOX)	5	5	6	6	6
유처리제(ℓ)	180	180	180	240	240
기 타	보호의 5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보호의 81, 소석회 3,000kg



○ 수방자재 연도별 현황

수방자재 종류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마대(40kg)	30,050	27,450	27,500	27,190	27,190
마대(1,000kg)	1,380	1,150	1,520	1,730	1,730
비닐(PE필름)	168	230	206	251	251
흡수성주머니	1,840	2,120	2,230	2,180	2,180
말목	900	900	900	900	900
묶음줄	180	203	216	215	215
작업공구	635	543	827	979	979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방재물자의 수량은 사용 및 보충 구매에 따른 증감이 있고 수방자재의 경우 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목표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외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현황

※조무사제외, 공무원 포함

구분	개소	의사 (명)	간호사 (명)	구급차 (대)	병상수 (개)	영안실 (실)
합 계	39	49	106	4	199	2
병 원	20	31	64	1	199	2
보건소	1	4	22	3	-	-
기타(지소 및진료소)	18	14	2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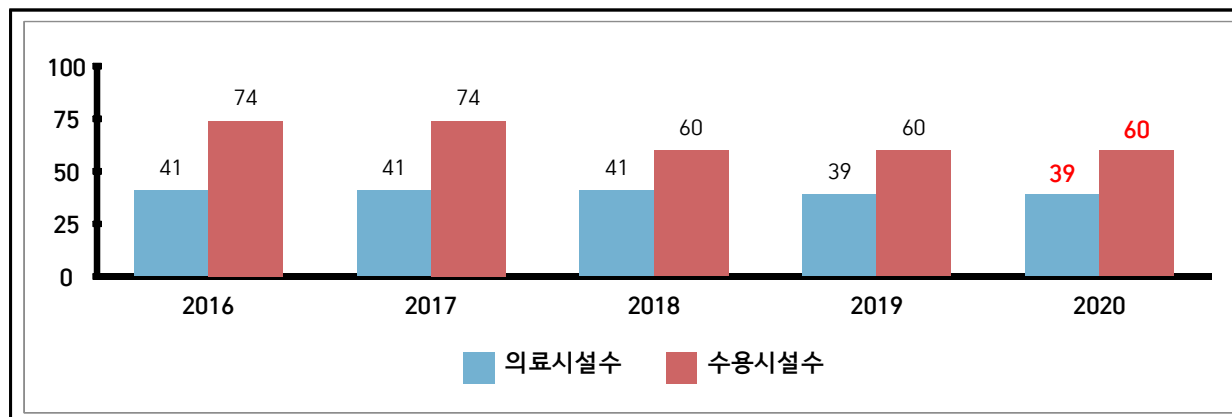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수용 시설	60	20,014	20	16,880	0	0	35	1,281	0	0	5	1,853

○ 의료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의료시설수		41	41	41	39	39
수용시설	개소	74	74	60	60	60
	수용인원	30,300	30,300	19,701	20,014	20,014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수는 전년도와 동일함

(나) 장비 지정 현황

○ 구조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비고
5	2	1	1	-	드론1

○ 복구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덤프 (15톤)	굴삭기 (6종)	그레이더	로우더	소형 덤프	추레라	기타
총계	318	5	34	1	4	14	1	259 엔진펌프32 수중펌프16 기타장비 211

○ 산불진화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 타
2,101	0	1	12	8	2,080

○ 기타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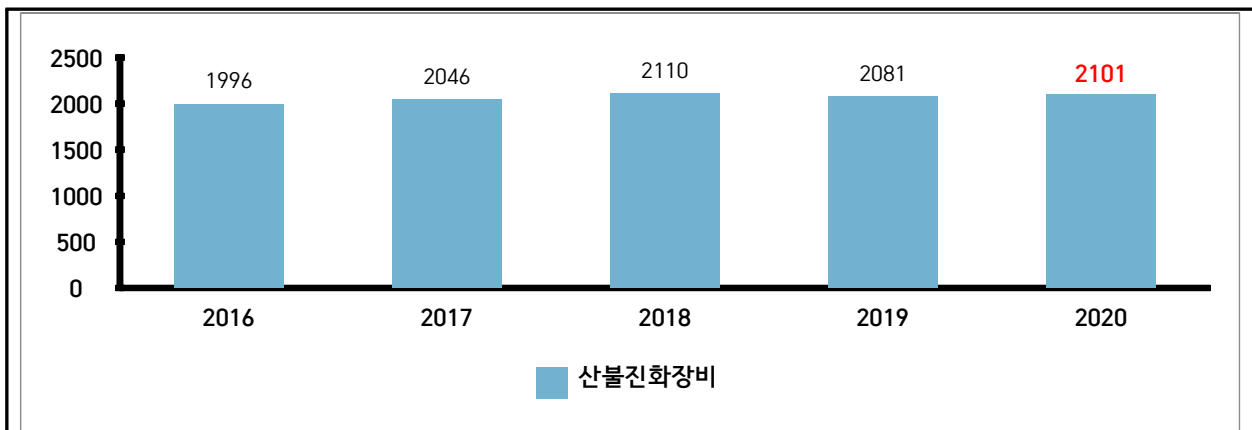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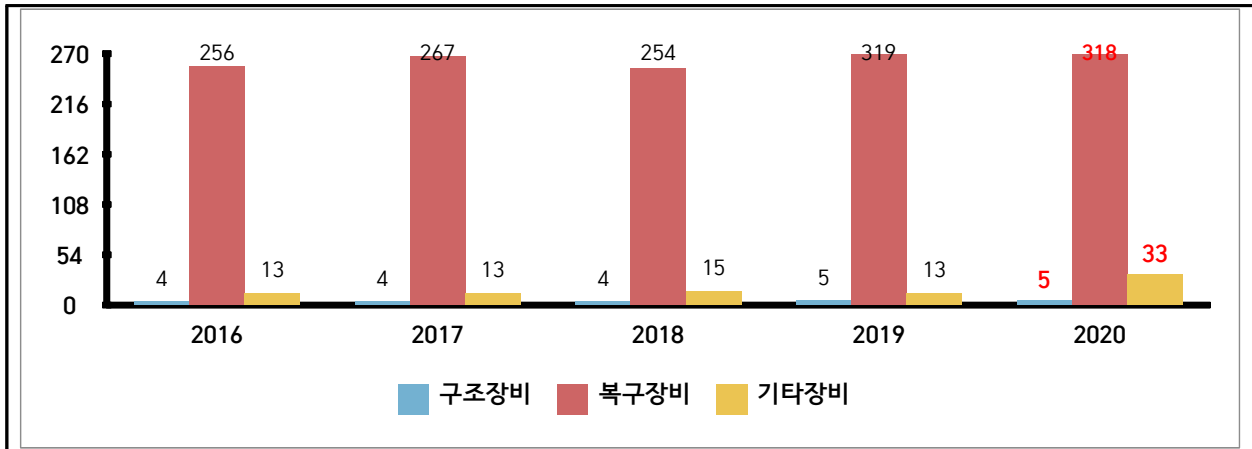
(단위 : 대)

계	유압구조장비	양수기	발전기	동력절단기	체인톱	비 고
33	5	8	2	9	9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조장비	4	4	4	5	5
복구장비	256	267	254	319	318
산불진화장비	2,046	2,110	2,110	2,081	2,101
기타장비	13	13	13	13	33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구조장비(배연차)를 보강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는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따라 소폭 증가함. 유압구조장비, 동력절단기, 체인톱 등 신규 장비 구입으로 기타장비 현황이 증가함.

(다) 인력 지정 현황

○ 기술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전산	보건	기타
인원	10	2	3	2	-	-	-	3

○ 기능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52	1	1	35	15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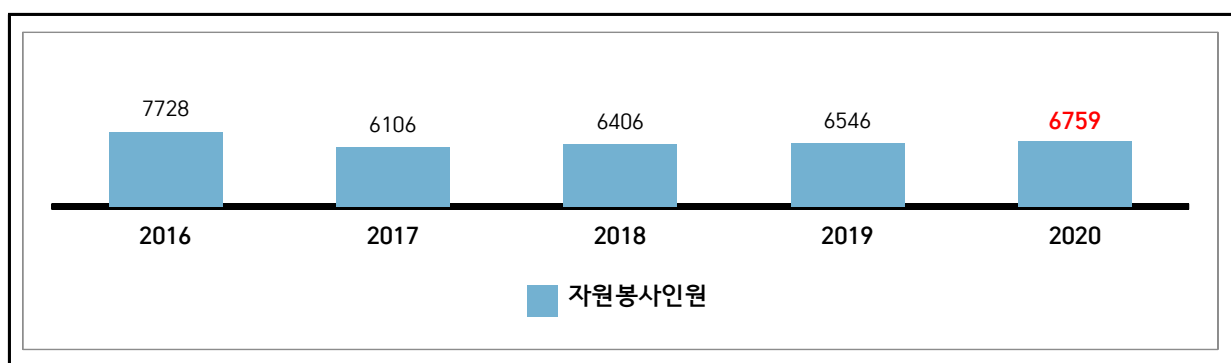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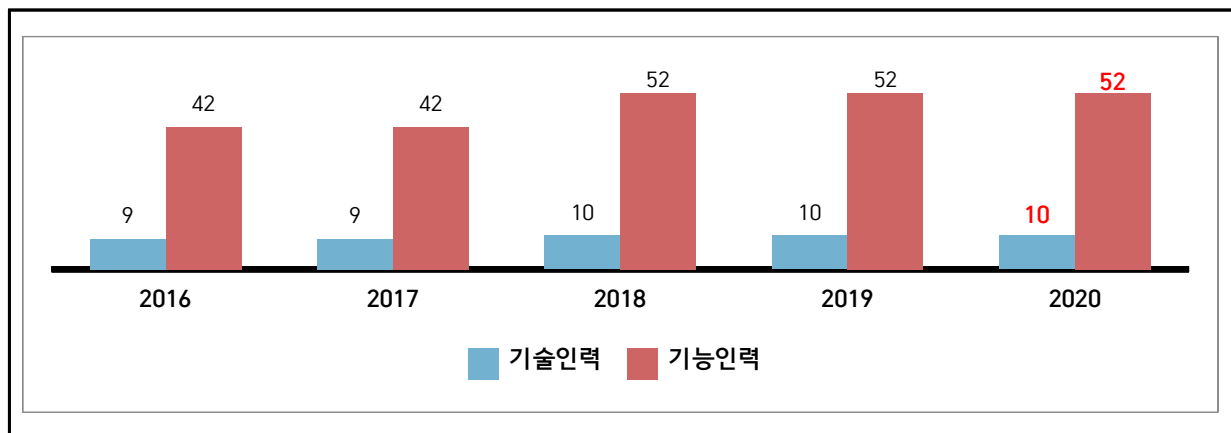
(단위 : 명)

계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자율방 범대	기 타
6,759	274	145	30	54	15	527	5,714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원봉사단체	7,728	6,106	6,406	6,546	6,759



☞ 인력지정 증감원인

- 기술·기능인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원봉사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정선군 인구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20 식중독 예방관리	‘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2020년 재난관리평가	‘20.1월~5월	행정안전부	보통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17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108	2	-	-	1.8%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진율	8.8%	8.8%	8.8%	1%	1.8%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이유

- 2021년도에 건축물 등 12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 성능확보 추진 예정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없음)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해 당 없 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경보시설(개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최저적립기준액(①)	적립액(②)	확보율 (②/①×100)
422백만원	465백만원	11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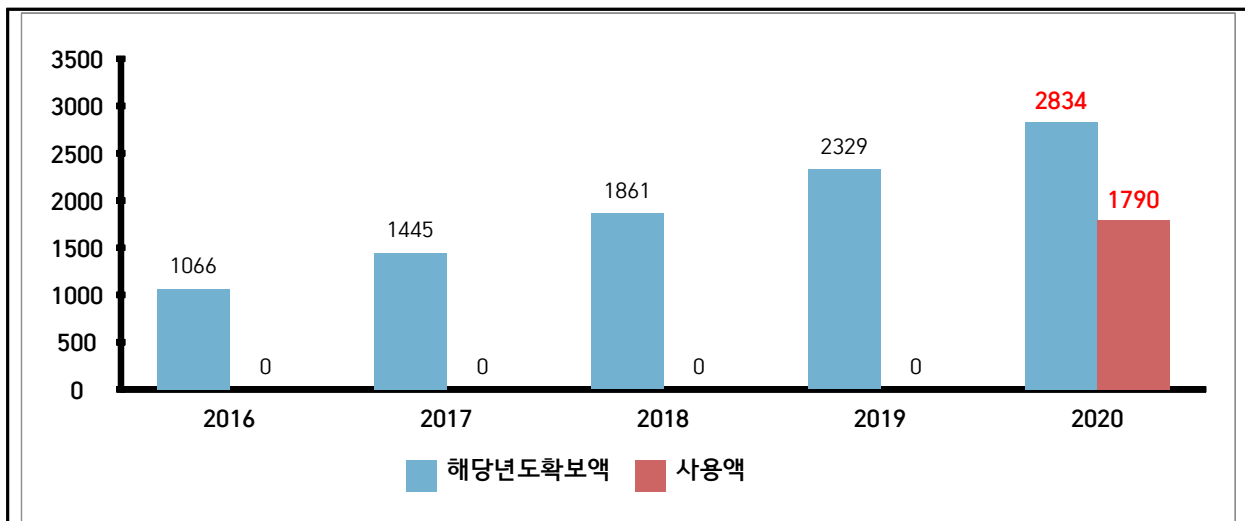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확 보 액		1,066	1,445	1,861	2,329	2,834
사 용 액	계	-	-	-	-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	-	-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	-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복구	-	-	-	-	1,790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가 원인

- 2020년 재난관리 기금 최저적립액은 4억2천2백만원이고 이에 4억6천5백만원을 적립하여 11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28억3천4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5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2020년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증가한 사항임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확진자 경유 시설 방역소독비 지급 등으로 총 17억9천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비 사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현황

○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현황

행동 매뉴얼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설해)	건설과	2006.12.27	풍수해(설해)재난 행동요령
지진	건설과	2006.12.27	지진재난 행동요령
대형화산폭발	건설과	2014.3.	대형화산폭발 행동요령
가뭄	건설과	2015.11.12	가뭄재난분야 행동요령
산불	산림과	2006.12.27	산불재난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과	2014.4.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환경과	2014.4.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행동요령
댐붕괴	건설과	2014.9.	댐붕괴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과	2014.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요령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전략산업과	2016.1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과	2016.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행동요령
가축질병	농업축산과	2006.12.27	가축질병 행동요령
감염병	보건소	2006.12.27	감염병분야 행동요령
전력	전략산업과	2016.10	전력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보건의료	보건소	2006.12.27	응급의료분야 행동요령
식용수	상하수도사업소	2007.8.29	식용수분야 행동요령
육상화물운송	안전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가스	전략산업과	2016.10	가스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문화재사고	문화관광과	2018.1.1	문화재사고 대응 행동요령
산사태	산림과	2018.4.5	산사태 분야 행동요령
한파	건설과	2019.02.27	한파 분야 행동요령
폭염	건설과	2019.4.19	폭염 분야 행동요령
초미세먼지	환경과	2019.10.	미세먼지 피해 행동요령
경기장 및 공연장사고	문화관광과	2020.9.1	경기장 및 공연장사고 행동요령

○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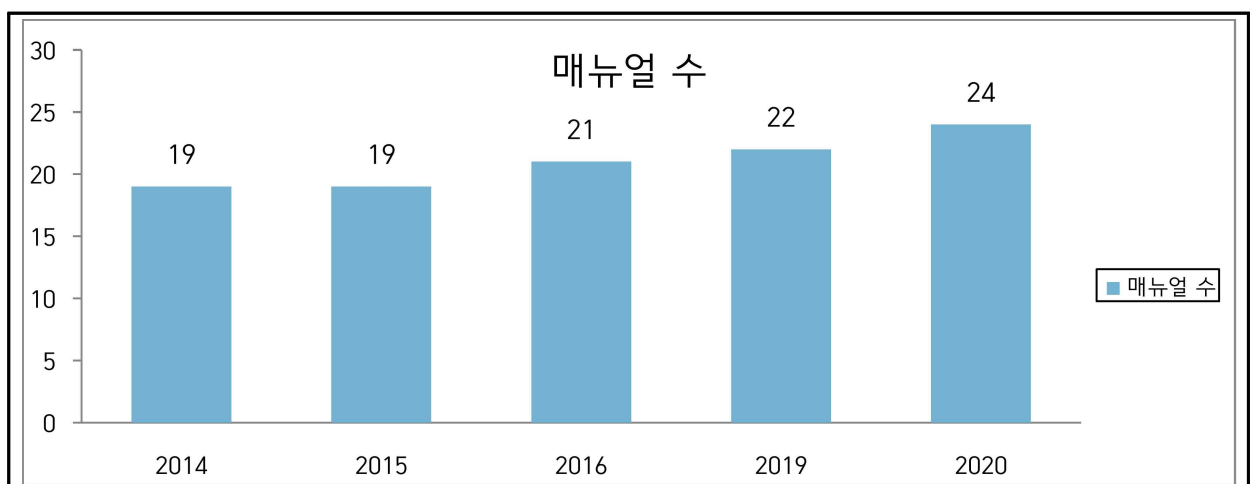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산불	2020.12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 보완	
지진	2020.12	재난폐기물 수거 관련사항 반영	
감염병	2020.06	감염병 위기 재난대응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관리체계 현행화	
가축질병	2020.12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사항 반영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2020.1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활용 주민대피 전파방법 반영, 감염병 보호대책 정비	
초미세먼지	2020.06	관계기관 주요임무, 재난관리체계도 수정	

○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유관기관 합동산불진화훈련	2020.11.10	유관기관 합동산불진화훈련	매뉴얼 현행화(협업체계)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뉴얼 수	19	19	21	22	24



☞ 기후변화로 인한 초미세먼지 매뉴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장 및 공연장사고 매뉴얼을 추가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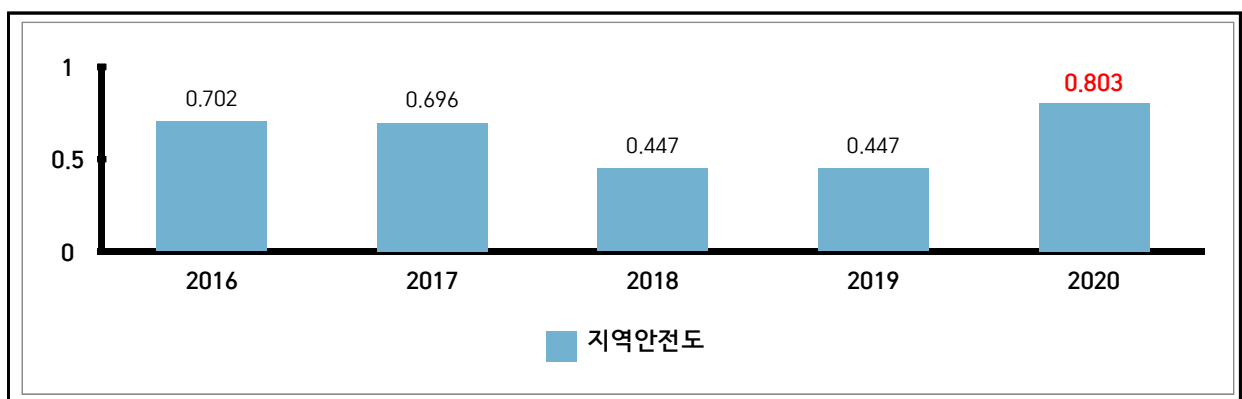
○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34	0.894	0.902	0.803	A

* (안전) A등급 < - - - - - > E등급(위험)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평가항목			지역 안전도	등급	비고
	위험환경	위험 관리능력	방재성능			
2016년	0.458	0.553	0.830	0.702	8	
2017년	0.506	0.553	0.830	0.696	7	
2018년	0.434	0.909	0.940	0.447	2	
2019년	0.434	0.909	0.940	0.447	2	1~10등급
2020년	0.434	0.894	0.902	0.803	A	A~E등급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전년도에 비해 위험환경 부분에서는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에서 높은 성적으로 평균적인 지역안전도가 증가하여 A등급(0.803)을 받음.

바.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풍수해보험

(가) 풍수해보험 개요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등)로 인한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나)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지원				군비추가 지원	홍보비
		소 계	국비	도비	군비		
2019년	206,221	185,610	148,965	7,329	29,316	-	20,611
2020년	234,106	47,053	-	14,116	32,937	120,000	20,000

※ 우리군에서는 일반가입자 주택과, 영농목적의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대한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추가지원 시책 추진

(다) 가입현황

(단위 : 동, m²)

구 분	1) 주택보험 가입현황			2) 온실보험 가입현황			비 고
	대상 가구	가입 건수	비율(%)	대상 면적	가입 면적	비율(%)	
2019년	7,125	813	11.4	633,400	273,290	43.1	
2020년	7,776	612	7.8	361,000	263,216	72.9	

※ 전년대비 가입실적

- 주택 : 24% 감소 (19년 813건, 20년 612건)
- 온실 : 3% 감소 (19년 273,290m², 20년 263,216m²)

2)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가) 정선군민 안전보험 개요

- 정선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1. 3. 1. ~ 2022. 2. 28.(1년간)
- 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군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T.1644-9666)

(라)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강도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의사상자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 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 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 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 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9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

- ※ “후유장해” 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 공시 관련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은 정선군 안전과로
(전화 : 033-560-248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40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 가.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공가, 병가, 연가 등 삭제
 - 공가, 병가, 연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만 조례에 정비
 -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특별휴가 신설
-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기존 2일) 개정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기존 2일) 개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신설)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 4. 1. ~ 2021. 4. 20.(20일)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총무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38), 팩스(033-560-259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청원경찰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④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하여 행정을 향상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단, 휴가 사용은 4회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⑧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⑨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의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정선군 공고 제2021-404호

정선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입법예고

「정선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가. 혼련으로 제정되어 있는 정선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작성례(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7005)

3. 주요내용

가. 규칙 명칭 및 내용 중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 중 포상·격려성 국외출장 등은 제외
(공무국외출장으로 불가)

다.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부서의 장 위촉

라.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국외공무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마. 출장목적 등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근거 명시

4. 제정 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 4. 1 ~ 2021. 4. 20.(20일)

6.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총무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38), 팩스(033-560-259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정선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선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적의 선정한다.

3.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정선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자 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선발 시 해당 업무 담당자 여부 적격성을 확인 및 유사업무 출장 중복 방지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

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선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요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요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규칙 작성례(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 국외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